

[붙임 3]

확 인 서				
제공기관명		사업명		
사 업 명				
제공기관 주소				
사 업 주 관 (시도,시군구)				
점검기간 부터 까지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사항(필요시 파일 또는 별도 자료 붙임.)				
○ 제목 : 제공인력 자격기준 위반				
(규정) 아동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55호(2012.5.29.)에서 규정한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- 심리, 상담, 치료학(언어, 음악, 미술) 등 아동·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				
※ 근거 : 법 제00조 제00항, 지침 00쪽 등 기재				
(위반) 제공인력 000은 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, '12년 00월~'13년00월 까지 이용자000 등 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정부지원금 000원을 결제하여, 위 자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				
※ 동 기간중 제공인력 000는 00대학교 00학과 0학년 재학 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				
<자격기준 미 충족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현황>				
이용월	제공인력	이용자	결제금액	결제일자
합계				
※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				
[붙임] 제공기록지 사본				

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
2015. . . .

확 인 자

수검자 소속:	직급	성명	(서명)
점검자 소속: ○○구	직급	성명	(서명)

- ※ 수검자 서명은 제공기관 대표가 하나, 대표자 부재 등 확인이 어려울 경우 차 상위자가 서명
- ※ 처분이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

< 작성 요령 >

- **(확인서 작성)** 추후 환수, 행정처분, 처벌 시 근거 자료가 되는 만큼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고 **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보**
 - 6하 원칙에 의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문구 등으로 본질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함
 - 불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
 -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 시 근거 제공
 - 해당 기관장 날인(또는, 기관장에 준하는 자)